

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 (제52조제1항 관련)

1.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.

가. 선체에 관한 것

- 1) 선체구조용 재료(강재, 강재외의 금속재료, 플라스틱수지, 유리섬유, 고무포 등)
- 2) 어선의 선체(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)
- 3) 선미골재
- 4) 타
- 5) 타두재
- 6) 타심재
- 7) 수밀폐쇄장치

나. 기관에 관한 것

- 1) 내연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(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) 및 실린더 블록
- 2) 선내외기(船内外機)
- 3) 선외기(船外機)
- 4) 보일러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(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)
- 5)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(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)
- 6) 압력용기
- 7) 열교환기
- 8) 공기압축기(수동식 제외)
- 9) 중간축, 역전기축, 스리스트축, 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, 기타 동력전달축
- 10) 축계의 클러치, 역전기, 유체커플링, 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
- 11)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, 선미관실(선미관 방수장치)
- 12)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
- 13) 아웃드라이버장치
- 14) 러더프로펠러장치
- 15) 워터젯추진장치
- 16) 액량계측장치
- 17) 유량계
- 18) 유가열기

- 19) 원격제어장치
- 20) 1류관용 관류(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)
- 21) 펌프류
- 22) 밸브류
- 23) 탄성체의 고무엘리먼트

다. 배수설비에 관한 것

- 1) 빌지펌프
- 2) 선외펌프

라. 조타·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

- 1) 유압조타장치
- 2) 닻
- 3) 쇠사슬
- 4) 로프
- 5) 유압펌프
- 6) 유압모터
- 7) 양묘장치
- 8) 계선장치
- 9) 비상예인장치

마. 구멍설비에 관한 것

- 1) 구멍정
- 2) 구조정
- 3) 구멍뗃목지원정
- 4) 구멍정, 구조정, 구멍뗃목지원정의 추진기관
- 5) 공기자급식구멍정의 공기자급장치
- 6) 구멍뗃목
- 7) 진수장치
- 8) 탑승장치
- 9) 보트대빗
- 10) 보트원치
- 11) 구멍부기
- 12) 구멍부환(구멍줄을 포함한다)
- 13) 구멍조끼
- 14) 구멍줄발사기(발사체 및 구멍줄을 포함한다)
- 15) 방수복
- 16) 보온구

- 17) 로켓낙하산신호, 신호홍염, 발연부신호, 자기발연신호
- 18) 자기점화등
- 19) 탐조등
- 20) 구명조끼 표시등
- 21) 캐노피등
- 22) 수밀전기등(방수기능이 있는 전기등)
- 23) 구난식량·식수
- 24) 해수탈염장치
- 25) 고압가스용기의 밸브
- 26) 수압이탈장치
- 27) 워크링크
- 28) 레이더반사기
- 29) 역반사재
- 30) 노출보호복

바. 소방설비에 관한 것

- 1) 소화펌프
- 2) 소화기(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)
- 3) 소화장치의 부품[압력용기, 스프링클러헤드, 매니폴드(여러 개의 가지관), 모니터, 혼합기, 밸브류, 관류]
- 4) 소화제
- 5) 소화호스, 노즐
- 6) 소방원장구(개인장구, 호흡구)
- 7) 물분무방사기
- 8) 국제육상시설연결구
- 9) 화재탐지장치(탐지기, 제어반, 표시반, 경보장치 및 구성부품)
- 10) 수동화재경보장치(발신기, 표시반 및 제어반)
- 11) 가연성가스검정기
- 12) 방화용재료
- 13) 방화문
- 14) 자동폐쇄형 방화댐퍼(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)
- 15) 고속배기장치
- 16) 플레임어레스트

사. 거주설비에 관한 것

- 1) 기계식통풍장치
- 2) 현창

- 3) 비상표시등, 탈출유도등
- 4) 비상조명장치
- 5) 공기식 매트리스

아. 항해용구에 관한 것

- 1) 선등 또는 그 부품(전구, 유리)
- 2) 음향신호장치(기적, 호종(어선위치 알림종. 이하 같다), 징 등)
- 3) 자기컴퍼스
- 4) 자이로컴퍼스
- 5) 음향측심기
- 6) 선속거리계
- 7) 회두각속도계
- 8) 도선사용사다리
- 9) 엔진텔레그라프
- 10) 재화문개폐표시장치
- 11) 누수검지장치
- 12) 홀수계측장치
- 13) 위성항법장치(GPS) 및 보정위성항법장치(DGPS)

자. 어로 및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

- 1) 크레인
- 2) 하역장치의 부품[데릭뿔, 윈치, 와이어로프, 블록, 구즈넥(Goose Neck)브래킷]
- 3) 어로용 윈치 또는 그 부품

차. 전기설비에 관한 것

- 1)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
- 2)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
- 3)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
- 4)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
- 5)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
- 6)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
- 7) 주파수변환장치
- 8) 선박용전선

카. 기타

- 1)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
- 2)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, 압력용기, 열교환기, 안전밸브

타.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 또는 기타

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가. 다음에서 정하는 어선용품

- 1) 원동기: 22kW(30PS) 미만의 것
- 2) 공기압축기: 수동식의 것
- 3) 중간축: 지름 60밀리미터 미만의 것
- 4) 프로펠러축: 지름 50밀리미터 미만의 것
- 5) 선미관: 지름 50밀리미터 미만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것
- 6) 프로펠러: 지름 700밀리미터 미만의 것
- 7) 관류(플렉시블 호스 포함): 1류관용 외의 것
- 8) 펌프류: 수동식의 것
- 9) 밸브류: 안전밸브, 선체불이밸브 및 1류관용 외의 것
- 10) 쇄사슬: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것
- 11) 로프: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
 - 가)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
 - 나) 지름 2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
- 12) 현창: KS V ISO 1751 C급 제외
- 13) 발전기: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
- 14) 배전반: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
- 15) 변압기: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
- 16) 전동기: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
- 17) 제어기: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
- 18) 하역장치: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
- 19) 냉동설비(냉매압축기, 압력용기, 열교환기, 안전밸브): 사용동력이 7.5kW(10PS)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, R22,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으로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어선용품

- 1)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
- 2)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
- 3)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선용품

다.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

(다만,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)

라.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제1호나목의 어선용품